

2018년 정부업무보고

합동 보도자료



【국민안전-재난·재해 대응】행안부, 노동부, 국토부, 경찰청, 소방청, 해경청

2018년 1월 23일(화) 10:00 이후 사용 총 8쪽 (붙임 별도				
담당	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	I .	, 사무관 김성일 -3203, 3204)	
	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		, 사무관 윤혜영 -7682, 7684)	
	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	과장 강주엽 (044-201	, 서기관 최아름 -3201, 3197)	
	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		i, 경정 최인규 -2002, 2702)	
	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조선호 , 소방정 이영팔 (044-205-7210, 7211)		
	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	과장 서승진 (044-205	l, 경정 최경근 -2018, 2118)	

현장중심! 국민체감!!

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

- 3일차, 6개 부처(행안·노동·국토부, 경찰·소방·해경청) 정부업무보고 -

◈ 부처별 중점과제 ◈

- (행안부)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
- ○(노동부)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, 생명·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
- ○(국토부)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감축
- (경찰청)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안전 개최
- (소방청) 비상 출동원칙의 총력 화재 대응시스템 강화
- (해경청) 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

【개요】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와 고용노동부(장관 김영주),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찰청(청장 이철성)·소방청(청장 조종묵)·해양경찰청(청장 박경민)과 함께 1월 23일(화) 10시,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재난·재해 대응 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.

-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·차관, 청장과 당·청 인사,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.
- □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한 반면, **재난 인프라의 취약성**과 사회 곳곳의 **안전경시 관행의 만연** 으로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 - * (사망자 중 안전사고사망자 비중) 12.8% (총 28,218명)/ OECD 평균 6.4%('16년)
 - 더군다나, 최근 포항 지진*('17.11.), 제천 복합건물 화재('17.12.), 영흥도 낚싯배 사고('17.12.)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,
 -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·재해 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이다.
 - * (규모 5.0이상 지진) '78년 지진관측 이래 발생한 총 10회 중 최근 2년간 4회 집중 발생
 - 각 부처들은 정부 재난·재해 관리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하여 보고하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, 핵심 이슈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하였다.

【 주요 내용 】

Ⅱ 행정안전부

- □ 행정안전부는 「사람 중심,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」을 목표로 △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△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중점과제로 보고하였다.
- □ **김부겸 장관**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**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**로
 - ① 재난상황 공유·전파체계 개선, ②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·훈련 강화, ③ 현장 수습·복구 지원체계 개선, ④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- 첫째,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·전파체계 구축 및 긴급신고전화(112·119) 통합 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 대폭 감축(8초→1초)*, 전국 단일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**,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 - * 신고내용 경찰·소방·해경 간 화면 동시표출, VTS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(7분→10초) ** ('18년) 중부권 5개 시·도 → ('19년) 남부권 9개 시·도 → ('20년)수도권 3개 시·도
- 둘째,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·평가제 도입과 구조기관 통합지휘 훈련,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확대 등 **안전교육·훈련**도 **현장중심의 실전형**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.
- 셋째, 현장 수습·복구지원체계도 **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 설치**, 이재민 구호소 설치기준 개선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, 재난현장 「**중앙수습지원단」의 체계적 구성·운영**, 재난유형별 중앙-지방-관계 기관 간 **정책협의체 상설·운영** 등 범정부 협업지원체계도 강화한다.
- 마지막으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공동활용이 가능토록 GIS기반의 「재난자원공동활용」시스템 구축, **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 제고***, AR·VR, 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.
 - * 지역특성·위험도를 반영한 지지체 주도의 상향식 매뉴얼 작성, 전자(mobile) 매뉴얼 보급 등
- □ 한편, 그간 안전관리대책에도 불구,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무시와 안전불감행태가 많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.
 - * 교통사고의 56%, 화재의 53%, 승강기사고의 69%가 안전수칙위반으로 발생('15년)
 - 이에,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, △법·제도 △인프라, △신고·점검·단속 △안전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먼저, 행정안전부가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'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'*를 도입하고, 중대 사고 유발행위 제재·처벌 강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하였다.

- 둘째, **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**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로,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다.
 - *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(금년중 816개 완료),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확대(1,300여개소)
- 이와 함께, (가칭)안전보안관*을 국민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고, 국가 안전대진단, 범부처·지자체 협업 단속체계를 통해 생활 곳곳의 관행 근절을 위한 이행력도 확보하기로 했다.
 - * 일정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민, 시민단체, 안전모니터봉사단, 현장관찰단 등
- 마지막으로,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, 국민, 민간기업·단체, 정부의 협업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.

② **고용노동부**

- □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현안 중 국민의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'산업 재해 감축'을 주제로 보고하였다.
 - 김영주 장관은 '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50% 감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*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, 강력한 혁신을 통해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.
 - * 노동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5.3 → 2.7명, 사고사망자 969명 → 500명 대
- □ 우선, 사고가 다발하는 **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**하기로 하였다.
 -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**사망사고 20% 감축을**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,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.
 - 삼성중공업, STX 등 지난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중인 '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'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.
 - * '18.3 결과 발표(공청회) 및 정책권고 → '18.下 제도 개선

- □ 현장을 변화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**산업안전 감독** 시 법령상 의무, 기술적 사항에 더하여 **안전경영시스템 구축까지 지도**하고
 - **사업장**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와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·평가하고 개선하도록 **지속 지도**할 계획이다.
 - 이를 지원하기 위해 **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신설·강화***하고, 위험 상황 발생 시 **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**히 하는 등 **법·제도**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.
 - * (발주자) 건설기획·설계단계부터 노동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책임 신설 (원청)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, 유해·위험작업 도급금지 신설 등

③ **국토교통**부

- □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'건설·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.'를 주제로 건설 환경, 지진·화재, 교통 분야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보고하였다.
- □ 우선,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를 '22년까지 50%이하로 줄이기 위해 **발주자의 안전책임**을 명확히 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.
 -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기계를 퇴출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. 건설안전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·실시간 모니터링 등 일상적인 관리체계도 정비한다.
- □ 지진에 대비해서는 '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(SOC)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,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지속 확대한다.
 - 건축물의 지진·화재 위험요인*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보강을 유도하고, 지진·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·피난통로·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를 검토한다.
 - * 필로티 구조, 가연성 외장재,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

- □ 교통 분야는 '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'을 목표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, 사고 취약 부문을 집중 개선**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: 한국 9.1명 vs OECD 평균 5.6명(35개국 중 31위, '15년)
 - ** 사고다발 지점 개선('18, 63개소) 및 급커브·급경사 등 위험구간 도로구조 개선('18, 50개소)
 -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(경찰청)과 함께 **저속 운행 유도시설^{*} 설치와 마을 주민 보호구간 사업^{**}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리체계를** 구현한다.
 - * 차로 폭 축소, 지그재그형 도로, 단차형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자발적 감속 유도 시설
 - ** 비도시부 마을에 주민 보호구간(전후100m)을 지정,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
 - 버스·화물차의 졸음 운전 방지를 위해 **차로이탈경고장치**(LDWS) 등 **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**하고 **교통신호 개선사업*도 확대**한다고 밝혔다.
 - * 좌회전 대기치랑을 감지해 대기시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 확대(17년 164-)18년 239개소)

4 경찰청

- □ 이어 경찰청(청장 이철성)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다.
 - △「안전속도 5030^{*}」적용확대 △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,
 - * 도시부 제한속도 50km/h.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30km/h로 하향 지정
 - 음주・난폭・보복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관리・단속을 강화하고,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현실화*등 그간 유명무실했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.
 - * △차량정체(80km/h 미만)시 추월차로 주행 허용 △차로별 구분 단순화(대형차량 우측 주행)
- □ 이어진 **평창올림픽의 안전관리 방안**에서는 총 13,309명의 경력을 배치해 교통소통과 대회시설 및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.
 - 아울러, **대회기간 중에 총기·화약류 사용이 제한***되고, 공항·KTX역 등 주요 시설에 경찰특공대가 전진 배치되며, 북한 참가단에 대해서는 전담 대책반을 운영하여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.
 - * 올림픽 기간 내 수렵총기 출고 전면금지

5 소방청

- □ 소방청은 현장 지휘관과 선착 출동대의 역량 강화와 진압활동 방해 요인 제거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중점 보고하였다.
 - **현장 부족인력(18,500명)을 단계적으로 충원**하고,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한다. 특히,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.
 - 또한, **화재 초기에 소방력이 집중 투입**될 수 있도록 출동대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, 소형복합사다리차 등 특수장비를 개발하여, 취약 지역에 우선 보급한다고 밝혔다.
- □ 아울러, 불법 주·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**현장 구조·진압활동을**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극 **강제 처분권을 행사**하도록 하고,
 - 비상구 폐쇄 등 **중대 위반사항**과 허위·부실 점검 업체에 대한 **처벌을 강화**하는 등 안전 위해요인들에 엄정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.

6 해양경찰청

- □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('17.12.)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주제로 보고하였다.
 - 특히, 낚시 등 **해양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***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,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.
 - * 낚시어선 사고 : '15년)206건 → '16년)208건 →'17년)263건
- □ 해양사고는 정확한 초기 상황 파악과 신속한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, 신고접수시스템을 개선*하고 상황요원의 교육·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.
 - * 긴급신고 접수요원 지방청에서 통합 운영 및 신고 접수시 상황실 內 전 직원이 신고내용 공동 청취

- 또한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**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·운영**하고,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그밖에 출동·도착시간 단축, 구조보트 계류시설 확충 등 **즉시출동 대세를 확립**하는 한편,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,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【 총평 】

- □ 이날 행사에 참여한 보고·참여기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킴 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,
 -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을,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법·제도, 인프라 등 **재난·재해 대응체계**를 협업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, **현장 중심의 대응역량**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.

붙임: 행사 개요, 주요 추진과제 설명자료 등. 끝.

'18년도 연두업무보고 재난·재해 대응분야 브리핑 참고자료



관계부처 합동

행사개요 (행안부)

□ 개요

- (주제) 국민안전 재난·재해 대응
- (일시) 2018. 1. 23(화), 10:00~12:00(2h)
- (보고기관) 행안부, 노동부, 국토부, 경찰·소방·해경청
- (장소) 세종 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

□ 참석 : 약 150명

- (국회) 당 정책위의장, 전략기획위원장, 상임위 간사 등
- (청와대·국조실) 수석, 비서관, 국무조정실장 등
- (보고·참여기관) 행안부·노동부·국토부 장·차관, 경찰·소방·해경청장 등
 - * 참여기관 : 복지·과기·농식품·해수·환경부, 식약처, 산림청, 원안위
- (민간 등)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, 민간 전문가, 산하기관장 등

□ 행사일정(안)

시 간	주요 내용	비고
	①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(2', 10:00~10:02)	* 사회 : 행안부 기조실장
	② 총리 모두말씀(5′, 10:02~10:07)	* 기자단 퇴장(3분)
10.00 12.00	③ 업무 보고(45′, 10:10~10:55)	* 보고기관 장관, 청장
10:00~12:00	④ 자유 토론(60', 10:55~11:55)	*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진행
	⑤ 총리 마무리 말씀(5′, 11:55~12:00)	
	⑥ 퇴장(12:00)	

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(행안부)

- ◇ 세월호 사고 이후, 소방·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 재난대응 지원 및 기존 노후 통신망 교체 등을 위하여 '20년까지 전국 단일 PS-LTE망* 구축
 - *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(국제표준)

□ 추진방안

○ (사업계획 수립)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기재부(KDI) 검토를 협의 완료 (11.30.)하였으며, 총사업비 확정 및 본 사업계획 수립(1월말)



- (본 사업 추진1단계) 중부권 5개 시·도 지역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구축 (기지국 4,318개소)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2운영센터 신축
 - ** <사업비> 1,218억원(구축 1,171억, 운영 47억) / <사업기간> '18. 4 ~ 12월(9개월)
 - ※ 다수 사업자 참여와 건전한 경쟁구도 유도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발주

□ 기대효과

- **(통합대응능력 제고)** 재난망은 재난현장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신속히 전파· 공유하고, 일원화된 지휘·명령 및 통합대응체계를 지원
- (노후 통신망 교체)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 통신망을 교체하고, 전국 단일망 구축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경제적 유지·보수 가능
- (산업육성) 철도망·해상망과 연동, 「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」을 구축,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역할 및 산업·경제적 효과 창출

사람 중심 안전문화 정착 (행안부)

◇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및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

□ 추진 방안

① 안전교육 확대 및 생애주기별(영유아~노년) 교육 실시

- (안전교육) 학생·안전종사자 중심에서 6대분야^{*} 전 국민 대상 확대 *생활, 교통, 자연재난, 사회기반체계, 범죄, 보건
- (추진기반) 기본계획(5년) 및 시행계획(매년) 수립(25개 부처 및 지자체) *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·운영,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실시
- (인프라) **컨텐츠 개발('17년 371개→'22년 988개)**, 전문인력 양성 (매년 2천명), 안전교육기관 지정·육성(매년 20개), 교육포털 구축·운영

② 체험 중심의 국민 안전교육 확대

- (체험관) 155개에서 '22년까지 177개로 확충(행안부 8, 교육11 해수2, 국토1)
- (체험교육) 체험관 및 이동형 체험교육을 통해 체험교육 확대 *매년 20%씩 확대('17년 289만명 → '18년 346만명 → '22년 703만명)

③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

- 장애인, 노인, 영유아 부모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(17개 지역 4천명)

④ 국민 중심의 안전실천 운동 전개

- 민간단체, 기업 등과 협업, 생활 속 안전 실천 및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
- 정부·지자체·시민단체·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정립
- (국민) 안전점검 및 신고 활성화(정부) 단속·홍보 및 교육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

□ 향후 계획

○ 범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(' 18.1월~)

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(국토부)

- ◇ 건설사업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·원청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고 근절 및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
- □ 발주자·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
 - (**발주자**) 건설계획·설계·시공 등 각 사업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**안전관리 책임 미이행 시 제재** 신설
 - 200억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**발주청의 안전관리활동을 평** 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기관장 책임성 강화
 - 건설기계 임대계약(원청⇔임대업체)의 **적정성을 심사**토록 의무화
 - (원청) 불법 하도급 계약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제 재를 강화*하고, 원청 책임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불이익** 부여
 - \star 例) 150만원 과태료 \rightarrow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+영업정지·과징금
 - ** 중대재해 벌점 신설(벌점 누적 시 PQ 감점·입찰 제한), 안전 관련 영업정지 부과 or 일정 수준 이상 벌점 업체에 대한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, 선분양 제한 등
- □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
 - (설비안전 강화) 연식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, 20년 이상은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(20년 이상 크레인은 수입 제한)

10년	년 미만 -	10년 이상	15년 이상	20년 이상
· 정기검/	. †	· 6개월마다 특정 부품	·매 2년마다	· 원칙적 사용제한+
(설치시	& 설치 후	안전검사 의무	비파괴검사 의무	예외적 연장허용
매 6개월	날 단위)			· 노후크레인 수입 제한

- (임대업체 책임 강화)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(1회),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(2회) 조치
- (작업자 자격관리 강화) 기중기·타워크레인·덤프트럭 등 자격·면 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 신설

첨단안전장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(국토부)

- ◇ 화물, 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* 장착 지원을 통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
 - * 차로이탈경고장치, 전방충돌경고장치, 비상자동제동장치 등

□ 차로이탈경고장치(LDWS) 장착 지원

- 장착비용 : 대당 50만원
- 지원금액: 국비 40%(20만원), 지방비 40%(20만원), 자부담 20%(10만원)
- 지원대상 :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버스(9m이상), 화물·특수(20톤 초과)
- 지원기간 : '18. 3~'19.12
 - * 보조금지원지침 마련중으로 성능시험기간을 거쳐 3월중 지원 예정
- 지원조건 : 전방충돌경고장치(FCWS) 기능이 포함된 성능인증시험을 통과한 기기에 대해 지원
- 지원 대수 : 승합 25,000대, 화물 50,000대 등 총 75,000대
 - * (전체 사업용 차량) 승합 : 126,342대, 화물 특수자동차 : 450,023대

□ 전방충돌제어장치(AEBS) 장착 지원

- 장착비용 : 대당 500만원
- 지원금액 : 국비 25%(125만원), 지방비 25%(125만원), 자부담 50%(250만원)
- 지원대상 : AEBS 장착 신규 차량으로 대폐차 하는 노선버스
- 지원기간 : '18~'22년도
- 지원 대수 : 광역 2,020대, 시외 4,160대, 고속 9,400대 등 총 7,300대



평창 동계올림픽 안전관리 방안 (경찰청)

□ 대회기간 경력운용 계획

- 소요경력 : 총 13,309명 (경찰관 6,858명, 의경 6,451명)
- 단계별 경력운용 : 1단계 1.25. ⇒ 2단계 2.1 ⇒ 3단계 2.8.
- 경력배치 : 연 283,000여명 / 일일평균 8,000여명

□ 대회시설 안전 확보

- 현장종합상황실 운영, 종합적 지휘·통제시스템 구축
 - 경기장·교통 CCTV, 헬기 촬영 영상 등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
- 대회시설(13개소) 및 지원시설(8개소) 대상, 3중 책임경비 실시 △1선: 시설내부 △2선: 안전펜스 내부 △3선: 안전펜스 외곽

□ 빈틈없는 테러 대응태세 구축

- 취약요소별 안전조치 강화
 - 대회기간 총기·화약류 사용제한 및 수렵총기 출고 금지
 - 조직위와 합동 테러 취약지 시설개선 및 장애물 보강
 - 테러취약시설 점검, 시설 종사자 대테러 교육
- 주요시설 경찰특공대 전진 배치 즉응태세 구축
 - 대회시설별 경찰특공대 및 테러차단장비 배치
- 참가국 경찰관 초청 국제경찰협력센터 운영
 - 참가국 테러 관련 위험인물 정보 공유, 입국제한 조치
 - 참가국 방문객 보호활동 전개

□ 북한 참가단 전담 대책반 운영

○ 통일부·조직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전담 신변보호대 운영 등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

소병활동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 (소방청)

◇ 불법 주·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장애 현상 발생 및 소극적 대처로 현장활동 지연 발생

□ 강제처분 등 근거

○「소방기본법」제25조제3항(강제처분) 및 제4항(손실보상)

《 소방기본법 제25조 》

- ▶ (강제처분) "~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."
- ▶ (손실보상) "∼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

□ 현 실 태

-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규정이 있지만,
 - 강제처분에 따른 책임소재, 요건 부재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처
- 손실보상 구체적 절차규정 미비 → 소방기본법 개정(공포 12.26, 시행 '18.6.27)
 - ※「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」운영 **9개^{*} 시도**
 - *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충북

□ 집행력 제고방안

- **손실보상 세부규정**(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) **마련**('18.6.27 시행)
 - * (시행령 규정내용) ①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, 지급절차 및 방법, ②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자격·운영, ③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
- 강제처분 요령 등 지침(매뉴얼) 마련을 통한 적극 조치
 - 법령위반 소방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제외 등 무관용 원칙 확행
 - 강제처분 집행력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 및 공익법무관 배치 추진(법무부 협의)
 -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조치(지자체<견인업체> 협약)
- 소방차 출동 및 활동여건 개선
 - 불법 주차금지구역 확대 및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(도교통법령 개정)
 - *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 소방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 요청 지정 등. 과태료 2배 부과
 - 소방차 전용구역 법제화(일정규모 이상 아파트, 기숙사 등, 소방기본법령 개정)
 - *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
 -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 적극 견인 조치(지자체<견인업체> 협업)

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(해양경찰청)

- 낚시인구 700만 돌파, 낚싯배 및 이용객* 증가로 안전사고도 지속 증가 추세
 ★ ('14년) 4,381척/246만명 → ('15년) 4,289척/281만명 → ('16년) 4,500척/342만명
- 해양사고는 초기 상황 파악과 전파가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, 신고접수시스템 개선* 및 VTS 관제구역 확대
 - * 긴급신고 접수요원 지방청에서 통합 운영 및 신고 접수시 상황실 內 전 직원이 신고내용 공동 청취
- 해경서 구조대와 거리가 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파출소에 잠수 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**구조거점파출소 지정·운영 등**

□ 연안 체험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





□ 해양사고 추세와 경향





□ 신고접수시스템 개선

- 기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의 지방청 통합 운영
 - 숙련된 신고 접수 전담자 60명을 5개 지방청 배치
- > 관계기관(소방·경찰) 협조 강화
 - 119·112 경유한 해양사고 신고전화 ➡ 즉시 연결
- > VTS 및 상황실 간 신고내용 공청 시스템 구축
 - 지방청↔ 해경서 간 공동 청취, 상황실 內 전 직원 정보공유
 - VTS ↔ 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 추진



□ 구조역량 강화

구조·안전 중심의 조직체계 개선

- > 잠수대원이 배치된 '구조거점파출소' 운영
- >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확대 추진

全 직원 수중구조 역량 강화

- > 전직원 스쿠버 교육, 기초 수중구조 역량 확보
- > 구조대원 채용 및 자체 양성, 전문구조역량 강화



□ 구조세력 즉시 출동태세 확립

- 출동시간 목표제 구조세력별 출동지령 접수부터 출동시까지 최단시간 설정·단축
 - * 이동용 구조보트, 특수차량 등은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두고, 민간선박 등 대체선박 확보
- 도착시간 관리제 구조세력의 출동시부터 현장 도착시까지 시간을 지속 관리하며 단축



> 구조보트 등을 즉시 출동 가능 위치에 계류하고, 장기적으로는 전용 계류시설 확충





